

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2. 10. 4 선고 2021가단15023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

담당변호사 김지웅, 김태종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수진

변 론 종 결 2022. 9. 6.

판 결 선 고 2022. 10. 4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. 1. 29. 체결된 매매계약을 80,000,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8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2014. 12. 10. C로부터 그 소유의 거제시 D 지상 건물 중 E호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130,000,000원, 임대차기간 2015. 1. 20.부터 2017. 1. 19.로 정하여 임차하고, 그 무렵 위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. 위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었고, 원고는 2019. 2. 18.경 C에게 '2019. 2. 19.자로 이사를 가고자 하니 임차보증금 130,000,000원을 반환하여 달라'는 내용증명을 보냈다. 나. C는 2019. 1. 29. 그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을 피고에게 매도하고(이하 '이 사건 매매계약'이라 한다),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

피고는, 원고가 2019. 2.경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므로,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사해해위취소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,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2019. 2.경 그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.

3. 본안에 관한 판단

원고는, C가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인 피고로 하여금 우선적으로 채권 만족을 얻게 할 의도로 피고와 통모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,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. 살피건대, 앞서 든 각 증거 및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,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2억 5천만 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 제외하더라도 C의 적극재산이 약 15억 4천여만 원인 반면, 소극재산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사실이 인정되고,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,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등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우선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C와 피고가 통모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

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.

4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차진석

별지